

#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 부과·장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41호)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07. 04.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07. 05.

다. 상정·의결일자 : 2023. 07. 12.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 2.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개정(법률 제19305호, 2023. 3. 28. 공포·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서식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3조, 제4조)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부과대상 정비(안 제3조)

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별표)

라. 조례 개정 시(2018. 9. 27.) 삭제되어 관련 조항이 없는 서식 삭제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역보건법」 제34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특이사항 없음 [복지지원과-22566(2023.6.8.)]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3-7호  
가) 예고기간: 2023. 6. 1. ~ 2023. 6. 2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가. 개정 취지(필요성)

- 「지역보건법」 개정(법률 제19305호, 2023. 3. 28.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검토

- 「지역보건법」 개정사항 반영
  - 인용 조문 정비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신설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
    -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제29조(동일명칭 사용금지)에 따라 현행 조례의 ‘건강진단’ 을 ‘건강검진’ 으로, ‘유사명칭’ 을 ‘동일명칭’ 으로 각각 정비
  - 개정(신설) 내용 반영
    -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신설로 군수, 보건의료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동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를 정비
- 별지 서식 삭제
  - 이전 조례 개정 시(2018. 9. 27. 개정) 별지를 제6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와 연계하여 삭제하지 않아 이를 정비함.
-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 종합의견

-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부과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7. 12. 원안 가결함.